

2024년 7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노인인구 천만이 되었으며, 12월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당초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었으나 이보다 조금 일찍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앞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왔지만, 현실이 된 초고령사회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준비는 부족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고령사회의 의미를 짚어보고,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 정도,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의 과제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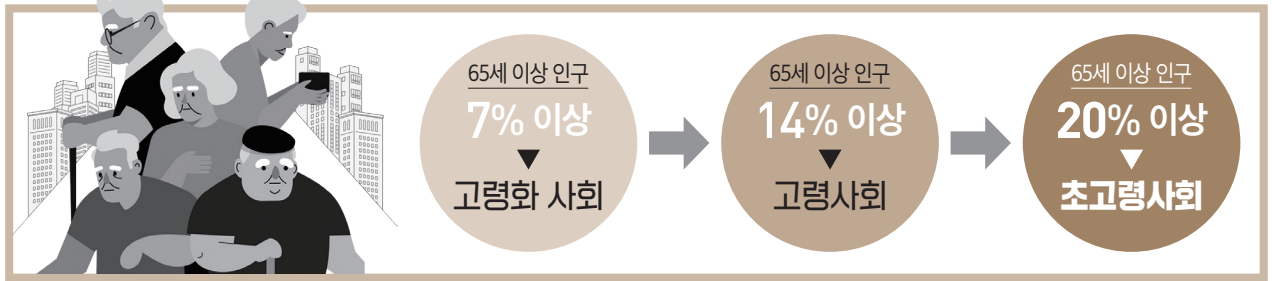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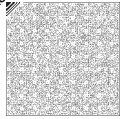
초고령사회의 의미

일반적으로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해 왔다. 물론 이 기준이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의 의미를 노인의 입장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4고가 다시 주목받게 된다. 4고는 4가지 고충으로 가난함, 병듦, 소외, 할 일 없음이다. 첫째, 한국 노인의 빈곤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OECD 국가 중 지속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소득을 중심으로 제시된 빈곤을 뿐만 아니라 자산을 고려해도 여전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높다. 둘째,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질병은 물론 정신적 질병 유병률도 높아진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노

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50% 이상의 노인이 1~2개 이상의 약 처방을 받고 있다. 또한 치매와 우울 유병률 역시 전체 노인의 10% 이상으로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셋째, 노인이라는 이유로 낙인찍히고, 차별당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등 소외를 경험한다. 2023년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들이 더 외롭고, 고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년제도를 통해 생산적 역할과 사회적 기여의 역할이 없어진다. 결국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4고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가 초고령사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초고령사회 대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지체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사회구조적 지체란 사회변화가 개인의 삶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



한다. 즉 초고령사회가 되어 100세 시대를 가정한다면 65세 이후 35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35년의 삶을 위한 사회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35년간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스템이 초고령사회에 맞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결국 초고령사회를 떠받칠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초고령사회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반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노인이 보호받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되고 소비시장을 이끌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산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실버타운개발 및 주택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조성, 노인관광상품 등의 여가산업, 노년층을 위한 보험상품, 노인전용자산관리, 의료 및 돌봄관련 ICT 기술개발 등 분야가 다양하다.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하면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러한 발전 전략도 그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초고령사회의 준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보자. 일본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3677만 명으로 총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노인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를 대비해 일본이 추구해 온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평생현역사회'이다. 아베 정권 때 연령무관사회(ageless society)를 표방하면서 노인이 되어도 은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기업들에게 계속고용, 정년폐지, 정년연장 등 선

택지를 주었고, 2020년에는 기업이 고령자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계속고용 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고용노동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 주거나 재고용 대상자의 기준을 건강, 근무태도 등으로 기업이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 정년폐지는 기업의 부담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도 일과 관련하여 65세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들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제도개선이나 사회구조의 변화로

나타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령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돌봄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방식의 개호보험법을 2000년에 도입하였다. 보험재정은 국고 50%와 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정안정화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최근에는 재정 문제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30%까지 올리고, 소득수준별로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 일본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도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노인맞춤형돌

봄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약 0.9%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생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의료적 서비스가 미약하다. 특히 대상자 대부분이 기능장애를 가진 만성질환자로 의료와 요양의 통합이 중요함에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이 되기 전 필요한 예방 서비스와 서비스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연령통합적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돌봄제도
구축 필요**

지금까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이제부터 해야 할 우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통합사회로 재편해야 한다. 여기서 연령통합사회는 사회참여에 있어 연령으로 인한 장벽, 즉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일본에서 언급하는 연령무관사회이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연령통합적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은퇴 후 교육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했다면, 이들이 연령차별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연령통합적 노동시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계속고용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및 포용적 고용정책이 중요하다. 임금소득과 노동시간 유연형 고용연

장,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고용연장 시 청년고용과 상생하는 제도적 설계, 더 많은 기업이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본인의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 75세를 기점으로 노쇠정도가 심해지고 의존적이 될 수 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돌봄으로 인해 개인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체계 구축과 재가서비스 강화를 통해 간병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와 돌봄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돌봄에 대한 본인책임도 중요한데, 돌봄 대상이 되기 전 예방은 본인을 위해서도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영양과 운동을 기반으로 한 자기돌봄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쇠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WHO는 '고령친



화도시' 조성을 통한 건강노화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고령친화환경이 조성되는데, 이는 노인에게 편리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노인에게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모두에게 편리

한 환경이 되므로, 고령친화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세대공존의 연령통합사회 구축해야

초고령사회라 해서 늘어난 노인의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기준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65세라는 연령은 달력에 의한 기준일 뿐 신체의 기능이나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인지기능 수준도 높다. 더욱이 노인들 스스로도 70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노인들이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되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순기능도 있다.

노인기준 연령은 순차적으로 올리되 사회적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연령을 올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소득 크레바스가 더 커지므로 이를 메꿀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즉 앞서 언급한 노동시장의 연령통합적 구조 변화와 함께 노인연령 상향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령통합사회라 해서 연령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연령은 제도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령과 함께 사람들의 기능적 수준을 연령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WHO에서도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적 연령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령만이 아니라 기능적 연령과 같은 보완적 개념을 적용

해 복지제도의 대상자 선별과 노동시장 진입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세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서로의 삶이 다른 세대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대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상생과 공존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세대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모든 세대의 참여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구조를 연령통합적, 세대통합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2002년 마드리드 국제고령화 행동계획에서도 그랬고, 우리 사회의 제3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초고령사회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이 내용이 빠졌고, 24년에는 예산배정도 되지 않았다. 초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㉞